

119구급대의 인력 및 구급차 배치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 가. 발의자 : 박성연 의원(찬성자: 25명)
- 나. 의안번호 : 제 2976 호
- 다. 발의일자 : 2025. 08. 11
- 라. 회부일자 : 2025. 08. 14

### 2. 주문

- 119구급대의 현행 등급별 차량 기준을 하한 기준(1급 2대 이상, 2,3급 1대 이상)으로 전환하여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한편, 구급대 인력 배치 기준을 구급차 1대당 최대 12명까지로 확대하여 4인 정원의 구급대 운영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119구급대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함.

### 3. 주요내용

- 현재 각 시·도의 소방력 운영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

안전부령)」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에 따라 소방서 및 출동대별로 등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1급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의 경우 구급차는 최대 2대까지만, 구급대원은 최대 18명까지만 배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 구급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서울의 경우 구급차 1대당 출동건수 및 이송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으로 구급대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65세 이상 인구,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 법령이 정한 구급차 2대, 구급대원 18명의 상한 기준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급차 운영대수와 인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센터에 구급차를 2대 이상 배치하여 출동을 분산시키고 구급차 1대당 12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4인 1조 구급대의 운영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함.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역의 특성과 구급수요를 반영하여 1급 구급대에 구급차 2대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구급대 등급별 차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구급차 1대당을 기준으로 구급대원을 12명 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4인 정원 구급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바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규칙」

#### **5. 이송처**

-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소속 국회의원실

## 6. 검토의견

### ■ 개요

- 본 건의안은, 구급대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19구급대의 구급차 증차 및 4인 1조 편성 등 탄력적인 근무체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의 인력 및 차량 배치 기준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 ■ 서울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 운영 현황

-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초기 처치 및 의료 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목적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sup>1)</sup>에 따라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 조직임.
-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구급차 수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1호)」,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 제292호)」에 근거하여 등급(1급~3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생략)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중략)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1급 구급대의 경우 인력 18명과 구급차 2대, 2급 구급대는 인력 9명 또는 15명과 구급차 1대 또는 2대, 3급 구급대는 인력 9명과 구급차 1대의 범위 내에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구급대 인력 및 차량 배치 기준 근거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안부령)」[별표3]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6.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배치인력	18명	15명 또는 9명	9명

<비고> 가. 별표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급대 등급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별표7] 소방서 하부단위 등급선정 기준

2. 119안전센터(구급대) 등급선정 기준

구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산정기준	기준	저위험군(1점)	중위험군(2점)
	인구( $\alpha$ )	5만 미만	5만~10만 미만
	출동거리 (반경)( $\beta$ )	대도시 1km / 그 외 5km 미만	대도시 1~2km/ 그 외 5~10km 미만
	최근3년평균 증증환자수( $\gamma$ )	300건 미만	300~500건 미만
$\alpha+\beta+\gamma=$	8점 이상 또는 직할구급	5~7점	4점 이하
차량/ 인력	구급차 2대 / 18명 (3인탑승×3교대×2대)	구급차 1~2대 / 9~15명 (3인탑승/2인탑승×3교대)	구급차 1대 / 9명 (3인탑승×3교대)

※ 직할 안전센터의 구급대의 경우 산정기준에 관계없이 1급

-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관내 119개 안전센터에 총 1,527명의 구급인력과 161대의 구급차를 배치하여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급별로는 1급 구급대는 37개대, 2급 구급대는 70개대, 3급 구급대는 12개대로 구성되어 있음.([표 2] 참조)

[표 2] 서울시 119구급대 운영 현황(소방재난본부 제공)

■ 119안전센터 119대, 구급대원 1,527명, 구급차 161대							
- 현재 법정 기준인력 대비 39명(103%)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							
- 소방서별 구급대 배치 현황 *구급차 : 2대							
관서명	구급대원	구급차	안전센터(등급)				
합계	1,527명	161대	119개대				
종로	57	6	세종로(1)	신교(3)	연건(3)	신영(2)	승인(3)
중부	51	5	무학(1)	회현(3)	충무로(3)	신당(2)	을지로(3)
광진	45	5	*구의(1)	*능동(1)	증곡(2)		
용산	45	5	한강로(1)	이태원(2)	이촌(3)	후암(3)	서빙고(2)
동대문	57	6	*장안(1)	청량리(2)	휘경(2)	전농(2)	용두(2)
영등포	69	7	*영등포(1)	*대림(2)	여의도(2)	당산(2)	신길(2)
성북	60	6	*종암(1)	*길음(1)	장위(2)	돈암(2)	
은평	63	7	*진관(1)	*녹번(1)	*역촌(1)	수색(2)	
강남	90	9	*삼성(1)	개포(2)	세곡(2)	*영동(1)	수서(2)
서초	75	8	반포(1)	*서초(2)	양재(2)	*잠원(2)	우면(2)
강서	75	8	*등촌(1)	방화(2)	개화(2)	마곡(3)	*발산(2)
강동	66	7	*천호(2)	고덕(2)	강일(2)	길동(2)	암사(2)
마포	72	8	*신수(1)	염리(2)	공덕(2)	*서교(2)	상암(2)
도봉	48	5	*방학(1)	도봉(2)	창동(2)	쌍문(2)	
구로	72	8	*고일(1)	수궁(2)	고척(2)	신도림(3)	구로(2)
노원	66	7	*하계(1)	수락(2)	*상계(1)	월계(2)	공릉(2)
관악	72	7	*관악(1)	*봉천(2)	난곡(2)	신림(2)	
송파	81	8	마천(1)	방이(2)	거여(2)	*가락(1)	운동장(2)
양천	72	8	*양천(1)	*신정(2)	*신월(2)	신트리(2)	목동(3)
중랑	54	6	신내(1)	*망우(1)	면목(2)	*중화(1)	
동작	48	5	동작(1)	*백운(1)	상도(2)	노량진(2)	
서대문	57	6	연희(1)	*북아현(2)	홍은(2)	북가좌(2)	
강북	57	6	*번동(1)	*우이(2)	삼각산(2)	미아(2)	
성동	39	4	행당(1)	왕십리(2)	금호(2)	성수(2)	
금천	36	4	*금천(1)	*시흥(2)			

○ 구급대의 근무체계는 소방청 지침<sup>2)</sup>에 따라 각 소방관서장이 지역별 여건과 출동 빈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3조 1교대는 101개대, 3조 2교대는 2대, 4조 2교대는 16개대가 운영 중임.([표 3] 참조)

2)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개선방안」(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제2446호, 2022.4.15.)

[표 3] 119구급대 근무체계

구 분	3조 1교대	3조 2교대	4조 2교대
시행 구급대 수	101개대	2개대	16개대
근무형태	당-비-비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	주-야-비-비
특 징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무	21일이 한 주기로 1주차는 주간근무, 2~3주차는 야간근무가 반복되는 근무 형태	3조 2교대보다 야간근무가 줄고 휴식시간이 보장
비 고	출근 일수 감소 출퇴근 편의성 증대 (원거리 출퇴근자에 유리)	교대근무 주기가 가장 불규칙한 근무형태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 중심 운영

- 최근 3년간('22~'24) 서울시 구급대의 총 출동건수는 179만 1,845건이며 이 중 이송건수는 97만 810건, 이송환자수는 97만 1,448건으로 나타남.([표 4] 참조)

[표 4] 최근 3년간(2022~2024) 서울시 119구급대 출동현황

구분	구급활동			화재진압활동	구조활동 (생활안전 포함)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	출동건수	출동건수
총계	1,791,845	970,810	971,448	16,721	896,202
연평균	597,281.7	323,603.3	323,816	5,573.7	149,367
1일평균	1,636.4	886.6	887.2	15.3	409.25
2024	559,006	285,048	285,426	5,654	299,172
2023	611,990	348,003	348,085	5,671	312,298
2022	620,849	337,759	337,937	5,396	284,732

- 이는 같은 기간 화재(1만 6,721건), 구조(89만 6,202건) 출동건수와 비교할 때 구급출동은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구급대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 119구급대의 인력 및 구급차 배치기준 개정 건의안 관련

- 본 건의안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과 「지방 소방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7)에 인력배치 기준을 구급 대 등급과 상관없이 ‘구급차 1대당 9명 또는 12명’으로 조정하고,
-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7)에 명시된 차 량 배치 기준을 상한 기준에서 하한 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해 1급 구급은 구급차 2대 이상, 2급 및 3급은 1대 이상을 배치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를 건의하는 것임.([표 5], [표 6] 참조)

[표 5]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6.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구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배치인력	18명	15명 또는 9명	9명	배치인력	구급차 1대 기준 9명 또는 12명					
<비고>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급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 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가. _____ _____, 3교대 또는 4교대 근무인력을 기준_____. 다만, _____ --- 2교대(2조 1교대) 인력_____.						
나. (생 랙)				나. (현행과 같음)						
다. (생 랙)				다. (현행과 같음)						

[표 6]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7]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구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산정 기준	생략				생략			
$\alpha + \beta$ $+ \gamma =$	8점 이상 또는 직할구급	5~7점	4점 이하	$\alpha + \beta$ $+ \gamma =$	8점 이상 또는 직할구급	5~7점	4점 이하	
<u>차량</u> <u>/</u> <u>인력</u>	<u>구급차 2대</u> <u>/ 18명</u> <u>(3인탑승×3교대×2대)</u>	<u>구급차</u> <u>1~2대 /</u> <u>9~15명</u> <u>(3인탑승×2인탑승×3교대)</u>	<u>구급차</u> <u>1대 / 9명</u> <u>(3인탑승×</u> <u>3교대)</u>	<u>차량</u>	<u>구급차</u> <u>2대 이상</u>	<u>구급차</u> <u>1대 이상</u>	<u>구급차</u> <u>1대 이상</u>	
				인력	<u>구급차 1대 기준 9명 또는 12명</u>			

- 현행 기준에 따르면, 구급대의 등급별 차량 배치가 상한선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 1급은 구급차 2대, 2급은 1대 내지 2대, 3급은 1대로 제한되며, 인력은 구급차 1대당 3인 탑승을 기준으로 3교대 방식인 경우 1급은 18명, 2급은 9명 내지 15명, 3급은 9명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이같은 기준은 출동 수요가 많은 지역에 구급차를 증차하거나 4인 1조 편성 또는 4조 2교대 같은 탄력적인 근무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예를 들어, 1급 구급대에서 구급차 2대를 각각 4인 1조로 편성할 경우, 구급차 1대당 12명(4인 1조 × 3교대), 총 24명의 인력이 필

요하나 현행 기준상 1급 구급대 인력 상한이 18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형태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본 건의안과 같이 관련 기준이 개정된다면 구급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차량과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구급대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